# '부동산 투자자문 표준투자권유준칙'에 관한 지침

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투자자 구분 등

제3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

(제1절) 투자자 정보 (제2절) 투자 권유

제4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

제5장 부동산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KB국민은행 WM추진부

## '부동산 투자자문 표준투자권유준칙'에 관한 지침

2025.7.18 제정

## 제1장 총칙

#### 제1조(목적)

- ① 이 지침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0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 따라 KB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의 임직원이 부동산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법상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과 투자자로부터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등(이하 "관계법령 등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-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"전문투자자"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
- 2. "일반투자자"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.
- 3. "투자자문자산"이란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부동산 및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임차권,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말한다.
- 4. "투자권유"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제3호에 따른 투자자문자산에 관한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
- 5. "투자자문"이란 부동산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(종류, 종목, 취득과 처분, 취득과 처분의 방법, 수량,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)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.
- 6."수수료"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7. "중도해지수수료"란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 기간 이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제3조(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원칙)

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.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3.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, 그에 대한 결과 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4.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2장 투자자 구분 등

#### 제4조(방문 목적 확인)

-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일반·전문투자자의 구분)

-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

## 제3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

## 제1절 투자자 정보

#### 제6조(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)

- ①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시에 투자자의 투자정보를 [별지 1]의 「투자자정보확인서」에 따라 파악하고,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,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.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(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)

- ①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(투자자정보 유효기간)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-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 시마다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 파악에 대해 안내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,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.

## 제2절 투자 권유

#### 제8조(투자권유 절차)

- ①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### 제9조(투자권유시 유의사항)

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투자자문자산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
- 2.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- 3. 관계법령과 은행이 정한 절차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·물품·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
## 제4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

#### 제10조(계약서류의 교부)

은행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서면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등 투자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(자료의 기록, 관리 및 투자자제공)

- ① 은행은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, 전산자료,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•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문업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는 경우 해당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)

-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.
  - 1.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
  - 2.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
  - 3.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
  - 4.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
  - 5.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
  - 6. 수수료에 관한 사항
  - 7.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
-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.
  - 1. 제1항 각 호의 사항
  - 2.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
  - 3.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
  - 4.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
#### 제13조(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)

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,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- 1. 투자자로부터 금전,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·예탁을 받는 행위
- 2. 투자자에게 금전,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,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- 3.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
## 제5장 부동산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14조(목적) 이 장에서 정하는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은 법 제58조(수수료)에 의거 은행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 등 거래상대방(이하 "투자자")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5조(적용 범위)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지침 및 은행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16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은행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은행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자문유형, 투입인력 및 시간 등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하여 자문수수료를 정한다. 다만, 은행은 투자자와 협의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자문 수수료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.

자문유형	자산산정기준	수수료율	
매입(투자)•매각(처분) 자문	매매금액	자산의 2.0% 이내	
부동산 재설계 자문	건별 별도 산정	자산의 2.0% 이내	
부동산 관리 자문	건별 별도 산정	자산의 2.0% 이내	
개발 분양 자문	건별 별도 산정	자산의 2.0% 이내	
기타 자문	건별 별도 산정	자산의 2.0% 이내	

③ 계약기간 만료 전 투자자의 사정 또는 계약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투자자는 별도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중도해지 수수료 계산방법은 [해당수수료 금액에 계약기간 만료까지 잔존일수를 365일로 나눈 일수로 곱한 금액]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는 상호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수 있다.

#### 제17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은행은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투자자문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 등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은행은 투자자문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④ 은행은 투자자문 수수료(부가가치세 별도)외에 투자자문 업무 수행중 기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거나 고객에게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.

제18조(수수료 정보의 공시) ① 은행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은행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 투자자정보확인서

기본정보
------

주민등록번호 (6 자리) (법인번호)	성명(상호)	

- 1. "투자자정보확인서"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 목적, 투자 규모 및 투자 희망지역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 하여징구하는 서류입니다.
- 2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고객의투자위험도가증기할수 있습니다.

## 투자자구분

□ 일반투자자(개인)	□일반투자자(법인)	□ 전문투자자			
주) 1. 일반투자자: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					
2. 전문투자자: ① 국가					

- - ② 한국은행
  - ③ 대통령으로정하는 금융기관
  - ④ 주권상장법인
  - 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 조)
- 3.일반.투자자의 경우아래확인서

### 투자자정보(해당 항목체크, 중복체크 가능)

항 목	내 용	
1.고객님의 투자자문 목적은 무 엇입니까?	□ 부동산거래 (부동산 매입(투자)타당성검토, 적정 매각가치 산정, 경매/NPL 투자분석 등) □ 부동산 이용 • 관리 (보유부동산 최유효활용방안, 포트폴리오재설계, 관리효율화방안) □ 부동산 개발 (부동산 개발 타당성, 적정분양가산정 및 분양성검토 등) □ 기타 (	)
1-2. 상기선택하신 항목의 투자경험은 어느정도입니까?	□ 없음 □1~2 회 □3 회이상(다수경험)	

항 목	내 용	
2. 투자자문대상유형은 무엇입니까?	□ 상가 □ 빌딩 □ 수익형주거용부동산 □ 토지 □ 기타 ( )	
3. 고객님의투자자 문규모는어느정 도입니까?	□ 20 억원 미만 □ 20 억원이상 30 억원미만 □ 30 억원이상 50 억원미만 □ 50 억원이상 100 억원 미만 □ 100 억원이상	
4. 고객님의투자자문 대상희망지역은 어디입니까?	<ul> <li>□ 서울(□강남권,□강북권,□강서권,□ 강동권)</li> <li>□ 경기, 인천</li> <li>□ 기타광역시</li> <li>□ 지역무관또는기타지역( )</li> </ul>	)

## 투자자체크리스트

투자자체크리스트는 투자자문계약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가 최소한 점검해야할 사항을 요약한자료입니다.

또한 투자자가 <u>투자자문권유인력으로</u>부터 투자자문계약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들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므로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. 다음 사항에 대해 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,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임직원 에게 다시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
1	투자자문계약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(들었음 ).
2	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의 결과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자문에 따른 모든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(들었음).
3	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방법 및 자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( 들었음 ).
4	투자자문계약의 해지방법, 해지수수료 등에 대하여 설명을 (들었음).
5	투자자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, 수수료,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설명을 (들었음).
6	투자자문계약상 정해진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 납부를 요구 받은 사실이 ( 없음).

본인은투자자정보에 대한 본인의 정보가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,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

	작성	일자:	20	년	월	일	
	고객	I의 성명(상:	호) :		(서 명	!/인)	
[	[대리인 거래시대리인성명:				(서명/인)]		